

判例教室

外国事件

本願 發明의 作用效果에 關한 告의 主張은 明確한 根據를 빠뜨려서 갑자기 認定하기 어렵게 된 事例

(東京高裁 59. 6. 28判決 昭和：56年(行ヶ) 173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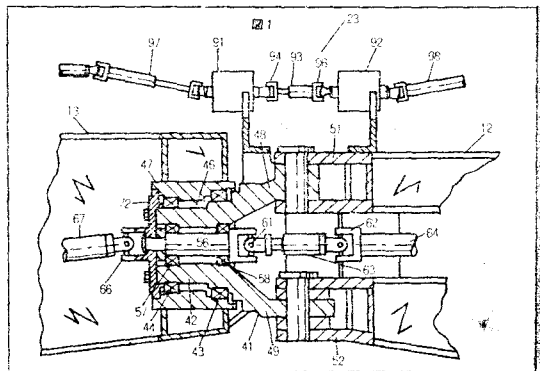
1. 事件概要

原告는 連結型車輛의 유니트式 連結裝置에 關한 發明에 對해서 特許出願을 했지만 이것을 拒絕한 審決을 받았으므로 그 取消을 求하고 本願의 發明에서는, (圖1參照)2個의 車輛部分 12, 13의 屈曲動作을 可能하게한 連結部材 41에 있어서 垂直軸(圖에서는 유니버살조인트 61의 位置)에 가까운 베어링 43을 다른쪽 베어링 44보다 크게 해서 들어가기 위해 垂直軸에 가까운 側에서 보다 크게 된 應力을 許容範圍까지 減少하고 同時에 垂直軸에 가까운 側에서 보다 크게된 荷重에 견디는 것이 되므로 連結部分에 있어서 充分한 強度를 얻는것이 되는것에 對해서 審決의 引用例의 裝置에 2個의 베어링은 같은지름 같은크기이므로 上記의 作用效果를 期待하는 것이 안된다는 等의 主張을 했다.

2. 判決의 要旨

判決은 下記의 理由에 依해 原告의 請求를 棄却했다. 즉 回轉軸을 支持하는 2組의 베어링의 지름을 서로 크고작은 關係의 物건으로 하는것은 本出願前부터 慣用技術로서 있고 그리고 車輛의 後部 13이 地面에 固定되어서 垂直軸에 가까운 側이 걸리는 것같은 힘을 받을때에는 連結部材 41에는 垂直軸에 가까운 側에서보다 큰 應力이 發生하지만 이것과 反對로 車輛의 前部가 地面에 固定되어서 垂直軸에서 먼 側이 걸리는 것같은 힘을 받을때에는 垂直軸에서 먼 側에 보

다 큰 應力이 發生하므로써 連結部材 41의 垂直軸에 가까운 側만을 두껍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housing 47의 垂直軸에 가까운 側도 두껍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있다. 그렇지만 本願의 發明에 있어서는 이들 두께의 程度, 相互의 關係에 對해서 構成上 조금도 限定되어서 있지않다고 말하고 그 實施例를 나타낸 圖面에서는 housing 47의 垂直軸 側은 육박해서 形成되어 있다. 어떻게 해서도 이 點에 關한 原告의 作用效果의 主張은 明確한 根據를 빠뜨려서 갑자기 認定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3. 論評

審査, 審判 또는 訴訟의 어느 段階에 있어서도 當該 發明의 特徵 또는 當該 發明과 引用例와의 相違點으로서 主張하는 事項은 그 明細書 또는 圖面中에 明確한 裏付를 갖는 것으로서 되지 않으면 안된다. ☺